

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<p>제5조(준용규정)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을 준용한다</p>	<p>제5조(준용규정) ----- -----제외하고는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을 준용하되 아래 각호는 다음과 같다</p>